

1894년 고부 ‘만석보’의 위치 재검토*

홍성덕**

〈목 차〉

머리말

I. 만석보 터 문화재 구역

II. 만석보 관련 기록 검토

III. 만석보 위치 재검토

VI. 만석보 위치 재지정을 위한 과제

맺음말

〈국문초록〉

1894년 1월 10일 말목장터에 모인 농민들이 고부관청을 습격하고 만석보를 파괴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시작되었다. 만석포가 파괴된 지 130년이 되었지만 동학농민혁명 당시 만석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973년과 1997년 만석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지만 그곳이 만석보가 있었던 곳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위치 역시 만석보가 있었던 곳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만석보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는 1914년 동진수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관한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리조합 설립 신청 기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 역시 측량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2004년 당시 확인한 나무 말뚝 역시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념비는 역사적 현장에 세워졌을 때만 그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다. 현재 만석보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지역은 만석보의 위치와 다르다. 문화유산 구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석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발굴하는 것이다. 하천의 특성상 나무 말뚝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억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위치를 재확인하고 바로 잡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만석보, 광산보, 말목장터, 동진수리조합, 만석보기념비

머리말

1894년 1월 농민들의 만석보 혁파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제적 행동이었다. 1894년 1월 10일 말목장터에 모인 농민들이 고부 관아를 습격하고 그 다음 날 만석보를 파괴함으로써 봉기의 결의를 드러내었다. 학정의 상징인 만석보를 파괴한 것은 조병갑의 학정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19세기 말 통치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탐관오리들에 대한 적극적 항의의 표시이었다. 고부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거론되어야 하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만석보 파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동학농민혁명을 단순한 ‘고부민요(古阜民擾)’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석보 파괴라는 역사적 행위에 대한 기억은 1973년 5월 11일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한 ‘만석보유지비’와 1976년 4월 3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면서 역사의 현장화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973년 유지비 건립 위치가 ‘만석보지(萬石湫址)’로 지정되면서 위치의 역사성이 퇴색되는 문제를 낳았다.

유지비 건립 당시에도 이미 만석보의 원위치가 아니라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2000년 5월 자연 화강석에 ‘萬石淤遺址’라 새긴 비를 다시 세워 역사의 현장성을 바로잡고자 하였지만 새로 새운 만석보유지비의 위치 역시 고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구술을 기초로 추정된 것이었다. 동학농민혁명 ‘만석보유지’의 위치 재지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I. 만석보 터 문화재 구역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만석보지(萬石淤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이하 보호조례) 제8조 지정기준(별표 1) 기념물 6목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에 해당한다. 문화유산¹⁾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보호조례 별표 2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하면 만석보 터의 경우 “바.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보호구역 지정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적정성 검토에 따라서 법에 정한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976년 4월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만석보지’의 문화유산 범위²⁾는 다음과 같다.

-
- 1) 2024년 5월 17일자로 기존 ‘문화재’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문화재의 명칭은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무형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민속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등으로 바뀌었다. 본고에서는 통칭은 문화유산으로 하며, 지정된 기념물 만석보지(萬石淤址)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칭한다.
 - 2) 전라북도 고시 제2008-455호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구역·문화재자료구역·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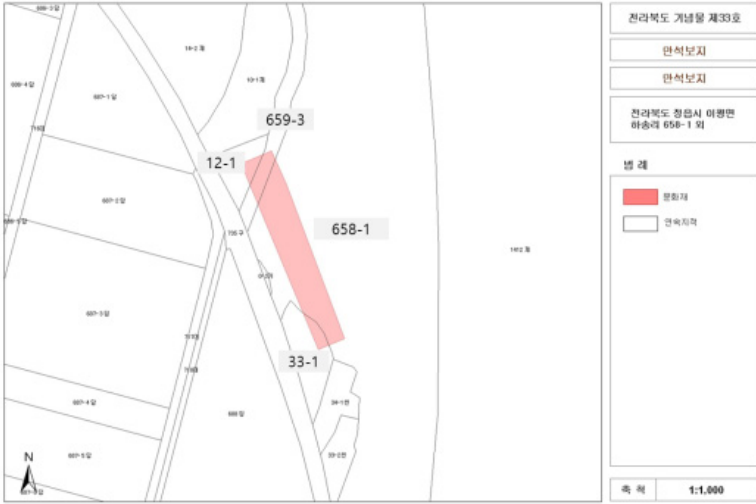
〈표 1〉 만석보지(萬石湫址) 문화재 구역(단위 : ㎡)

| 지번 | 지목 | 지적 | 지정구역 | 문화재 구역 | 보호구역 | 토지소유자 |
|-------|----|-------|-------|--------|------|-------|
| 658-1 | 제방 | 7398 | 1,307 | 1,307 | - | 건설부 |
| 659-3 | 제방 | 374 | 223 | 223 | - | " |
| 12-1 | 천 | 565 | 70 | 70 | - | " |
| 33-1 | 천 | 846 | 90 | 90 | - | " |
| 계 | | 9,183 | 1,690 | 1,69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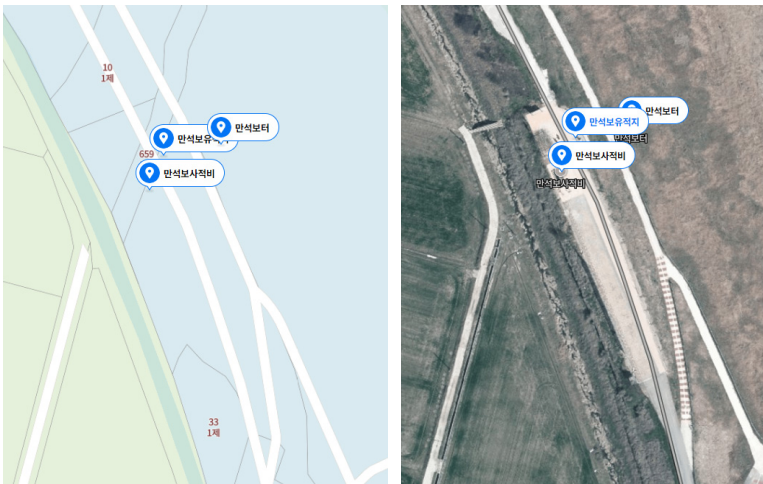
만석보 터는 문화재 구역만 지정되었을 뿐 보호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만석보의 위치가 하천 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만석보지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4필지 지적 면적 9,183㎡에 지정구역 1,690㎡로 약 5백 여 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다. 현재 ‘만석보유지비’와 ‘만석보 시비’가 세워진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구역에 해당한다.

만석보의 위치가 〈표 1〉의 위치로 지정 고시된 것은 1973년 만석보유지비의 건립과 관련되어 있다. 즉 만석보유지비가 건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방과 제방 아래 둔치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만석보의 위치가 1973년 만석보유지비 건립 당시에도 500미터 하류 지역이라는 고 최현식의 일화나 2004년 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예당마을 박형규의 고증 내용³⁾ 등으로 보아도 1894년 만석보가 있었던 장소는 아니다.

3) 정음시, 2004, 『동학농민혁명유적지복원 정비계획』, 266쪽.



〈도면 1〉 ‘만석보지’ 고시 도면(국가문화공간정보)



〈사진 1〉 만석보지 지도와 위성사진(네이버 지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만석보 터의 위치는 지정 당시부터 역사적 위치 고증 없이 만석보유지비가 세워진 위치를 중심으로 지정된 결과물이다.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

복에 관한 특별법」이 20년이 된 지금 잘못 지정된 문화유산의 위치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II. 만석보 관련 기록 검토

만석보에 대한 기록은 1894년 4월 24일 의정부에서 고부군 안핵사 이용태가 올린 일곱 가지 조목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고부군 안핵사(古阜郡按覈使) 이용태는 (중략) 단지 백성들이 우려하는 일 중 몇 가지 문제만 조사한 성책(成冊)을 올려보내면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른바 읍(邑)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일곱 조목으로 이관된 토지, 전운소(轉運所)에서 양여미(量餘米)를 모두 더하고 새로 생긴 부족되는 쌀, 유망(流亡)한 사람들에게서 거두지 못한 결세(結稅), 진답(陳畝)을 개간한 논, 도조(賭租), 진답(陳畝)을 개간하지 않은 논, 땔나무, 만석보(萬石湫)의 수세(水稅), 팔왕보(八旺湫)의 수세입니다.⁴⁾

의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이용태가 고부군의 폐단으로 보고한 것 중 만석보와 팔왕보의 수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고부군 내 수세 문제로 만석보와 팔왕보에 대해서 오지영 역시 『동학사』에서 언급하고 있다.

‘고부민란 사건에 수세미를 멋대로 거두었다는 것은 고부 북면에 있는 만석보와 팔왕보를 백성의 贖夫로서 防禦을 하게 하고 그 보 수세는 답매 두락에 조 세 말씩 세를 거두어 고부군수 조병갑이 가서 私腹을 채우려 한 것이오’

4)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4월 경오

그렇지만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⁵⁾에는 ‘고부 북면에 있는 만석보라는 것을 백성의 부역으로 수축케하고’라 하여 팔왕보가 누락되어 있다.

「전봉준 공초」에 의하면

‘지금 그 세세한 조목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그 개요를 대략 고하옵니다. 하나는 민보(民湫) 아래 보(湫)를 쌓고 가혹하게 민간에 명령하여 상답(上畝)은 한 두락에 두말을 거두고 하답(下畝)은 한 구락에 1말을 거두니…’

라 하여 조병갑이 새로 민보 아래에 쌓은 보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민보(民湫) 아래에 새로 쌓은 보가 곧 만석보에 해당하며, 민보는 만석보 상류에 있던 옛 보를 칭하는 것이다. 민보는 ‘광산보(光山湫, 廣山湫)’, ‘예동보’로 알려져 있다. 광산보 즉 옛 보는 1718년 김명에 의해 처음 축조된 뒤 1861년 고부군수 김우현이 다시 쌓았다.⁶⁾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鎖錄)』에는 통영에서 온 고부민란염탐기가 기록되어 있는 데 이에 의하면 조병갑이 쌓은 보를 ‘구막보(九幕湫)’라 칭하고 있다.

통영에서 고부민란염탐기가 와서 이를 기록한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나라의 명령이라 칭하면서 백성을 불러 모아 구막보를 쌓도록 명령하니 백성들이 모두 명령을 듣고 이 보를 쌓으니 (혜택을 받은) 논이 수천 석이었고 매 두락마다 5말을 세금으로 거두니 수천 석이 되었다.’⁷⁾

5) 오지영, 『동학사(초고본)』(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권) 「全羅各郡의民亂」(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이하 사료아카이브)

6) 「군수김후우현홀민선정비(郡守金侯佑鉉恤民善政碑文)」, 『이평면백년사』(『서남저널』 2023년 3월 21일. 「만석보 주변의 물의 역사」)

7)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鎖錄)』 1894년 4월 22일.

『동도문변』에 의하면

갑오년 정월 11일 (고부)읍민 수백명이 명례궁보(明禮宮湫)에 세금을 더 거둔 일로 연명으로 소청하면서 해산하지 않으니 군수 조병갑이 감영에 와 말하기를 병사 수백명으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들을 도륙하고자 한다 하였다.⁸⁾

라 하여 만석보를 '명례궁보'로 칭하고 있다. 다만 '명례궁보'가 명례궁에 소속된 보를 의미하는 지, 보의 명칭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고부 일대는 명례궁의 궁방전이 있었던 곳으로 궁방전을 운영하기 위한 관개 시설 역시 명례궁의 관할로 생각할 수 있어 명례궁보라 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학농민혁명 후 40여 년이 지난 뒤 장봉선이 쓴 『전봉준실기』(1936)에 의하면

군내 배들평은 유명한 평야로 태인, 정읍, 고부 세 군의 지류가 중앙으로 관통해 흘러 지역 농민이 그 상류에 보를 쌓고 관개에 활용함으로 이 평야는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없어 보의 이름을 만석보라 하였다. (중략) 의롭지 못한 조병갑이 (중략) 자비로 만석보(중전의 4-5배 이상)를 개축하여 물을 가두니 물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심한 것은 물론이요

라 하여 배들평에 지역 농민들이 보를 쌓았는데 그 보의 이름을 만석보라 하였으며, 이후 조병갑이 4-5배 이상 개축하여 오히려 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였다고 하였다. 기존에 있던 만석보를 다시 크게 개축하였다는 견해는 『전봉준실기』보다 앞선 1931년 9월 22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김상기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 『동도문변』,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6권, 160쪽. 고부기요변(古阜起撥辨)

계사년(1893) 봄에 동진강 상류에 있는 만석보가 파괴되었음을 기화로 인부 수만(명)을 징발하여 개수공사를 시키고 그해 가을에 이르러 몽리답 때 두락에 수세로 평균 3말 가량씩을 강제 징수하였다.⁹⁾

그리하여 癸巳年봄에 東津江上流에 있는 萬石湫가 破壞되엇음을 奇貨로 人夫數萬을 徵發하여 改修工事를 시키고 그해 가을에 이르러 蒙利畓 每斗該水稅로 平均三斗가량씩을 徵收하였다 (水稅에 잇셔서는 大

또한 1933년 2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고부의 만석보민요」라는 제하의 내용에는

고부군 마항(속칭 말목이라고 하는 데 지금의 정읍군 이평면 일원의 지역)에는 만석보라고 칭하는 신보(新湫, 원문에는 臣湫)가 있었다. 이 보를 막음으로 해서 관개의 이익을 입은 토지가 많은 반면에 또한 수해를 입은 지역도 많았다. 그럼으로 (물이) 보를 넘을 때마다 피해 지역의 인민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관례이었고 (하략)¹⁰⁾

라 하여 만석보를 쌓은 이후 강물이 보를 넘어 수해를 입은 지역도 많았다고 하여 『전봉준실기』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1936년 10월 11일자 조선일보에 신태인지국 김용○이 쓴 기사에 의하면

신라시대 수리사업으로 만들어 진 벽골제 그 제방이 중심이고, 금만평야 이조시대의 수리사업으로 만들어 진 광산(보)가 중심이고, (이)평(梨?坪), 백산평야와 갑오년 동학란의 분화구인 고부 조군수(조병갑)가 만든 만석보가 중심이 된 신태인 정도평야는 일구무(언)의 옥야 천리요 ...¹¹⁾

라 하여 동진강 개수와 관련하여 수해 근절을 위한 기사에서 벽골제와,

9) 『동아일보』, 1931년 9월 22일.

10) 『조선일보』 1933년 2월 10일자. 「古阜의 萬石湫民謠」

11) 『조선일보』 1936년 10월 11일. 「十三萬農民關係의 東津江改修問題(完)」

광산(보), 만석보 등 이 신태인의 정토(淨土)평야를 기름지게 한 것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편 1974년 조선일보에 '민요의 고향'이라는 기획기사에 실린 정음군 정우면 대신리의 '방개소리'에는 두 개의 보가 나온다.

어헤야-야-해 해히에-용아 혀엥게 웅가리로다

사람이 많아도 대답이 적어 (중략)

저건네 갈피봉 비 물어 오니

우장을 허리다가 둘러입고

기십이나 매세

어허리사오

어헤야-야-해 해히에-용아 혀엥게 웅가리로다

뱃작뱃작 우겨를 주소

앞 독 벼루는 뒷 독을 보고

뒷 독 벼루는 앞 독을 보면서

어허리 사오

어허리 사오¹²⁾

정우면 대신리는 이평면 오소리와 10여 리 떨어져 있는 마을로 노래에 나오는 앞 독과 뒷독은 광산보와 만석보를 칭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만석보는 구막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만석보 상류에는 광산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광산보와 만석보 등에 관해서는 연구자별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동학관련 기록과 기존 연구의 만석보에 대한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조선일보』 1974년 4월 12일. 「民謠이 故鄕」 ⑥

〈표 2〉 만석보 개축 및 위치에 대한 의견

| 구분 | 내용 | 출처 |
|------|----------------------------|-----------------------|
| 동도문변 | 만석보를 '명례궁보'로 칭함 | 『동도문변』 |
| 전봉준 | 민보 아래 새로 보(만석보)를 쌓음 | 「전봉준 공초」(1894) |
| 장봉선, | 기존 만석보를 조병갑이 크게 개축 | 『전봉준실기』(1936) |
| 오지영 | 조병갑이 만석보와 팔왕보를 축조 | 『동학사』(1940) |
| 김상기 | 1893년 동진강 상류 만석보 파괴 후 개수공사 | 『동학과 동학란』(1947) |
| 최현식 | 만석보(예동보) 아래 새로 만석보를 축조 | 『갑오동학혁명사』(1980) |
| 김용덕 | 기존 만석보를 5개 가량 개축 | 『동학혁명 혁명투사 전봉준』(1973) |
| 저창렬 | 만석보 및 새로운 쌓은 둑 | 『고부민란의 연구』(1985) |

만석보에 관한 지금까지의 의견은 보의 명칭을 제외하면 조병갑에 의해 쌓여진 만석보와 그 이전에 있었던 보의 관계 문제로 기존 만석보를 조병갑이 크게 개축하였다는 견해와 기존 보 아래에 새로 보를 쌓았다는 견해로 나뉜다.

위치 고증과 관련해서 볼 때 기존의 견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존의 만석보 위치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한 지점 아래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즉 조병갑이 새로 쌓게 한 만석보의 위치가 합류지점 아래 인지 상류인지에 따라서 위치 확인 장소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4~5 배 크게 쌓아 수세를 늘렸다는 내용을 감안해 본다면 기존 만석보 보다 하류에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 보를 쌓은 후에 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것도 기존의 보를 개축했다기 보다는 새로 보를 쌓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만석보와 새로 쌓여진 만석보의 위치는 다르고, 1894년 농민이 허물어 버린 만석보는 하류에 새로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만석보 위치 재검토

만석보는 정읍군 용동면 상산리에서 시작된 용호천이 태인면 궁사리에서 태인에서 내려오는 동진강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다 신태인에서 이명면사무소를 잇는 736 지방도에서 정읍천과 합류하여 북서진하는 초입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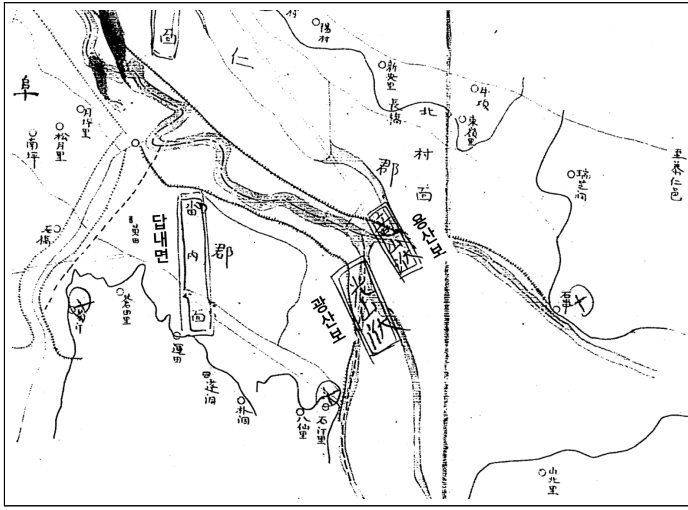
1872년 지방지도 고부군 지도에 의하면 만석보는 답내리 우측에 태인 대각교에서 흐르는 하천과 달천면 좌측을 흐르는 정읍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지방지도의 경우 벌말면(伐末面)이 답내면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나 해동지도 등 다른 지도의 고부군 지도에는 답내면의 동북쪽 즉 합류지점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고지도 내에서 만석보나 광산보의 위치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고지도 뿐 아니라 『여지도서』 등의 지리지에서도 보의 현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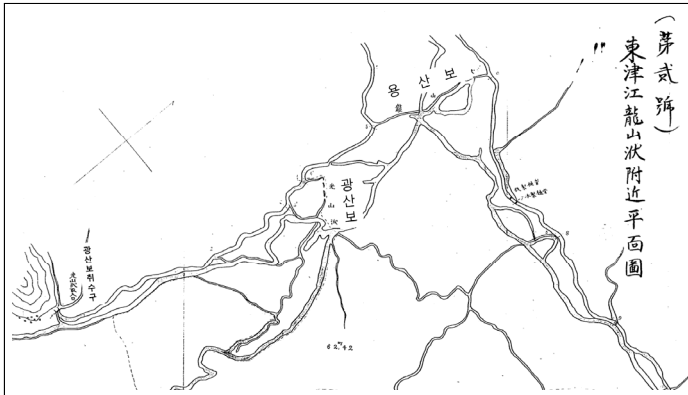


〈지도 1〉 1872년 고부군 지도

만석보 위치에 보가 표시된 것은 1914년 조선총독부 수리조합에서 생산한 「동진강수리조합설치인가에 관한건」 중 동진강 수리조합 예정 구역도1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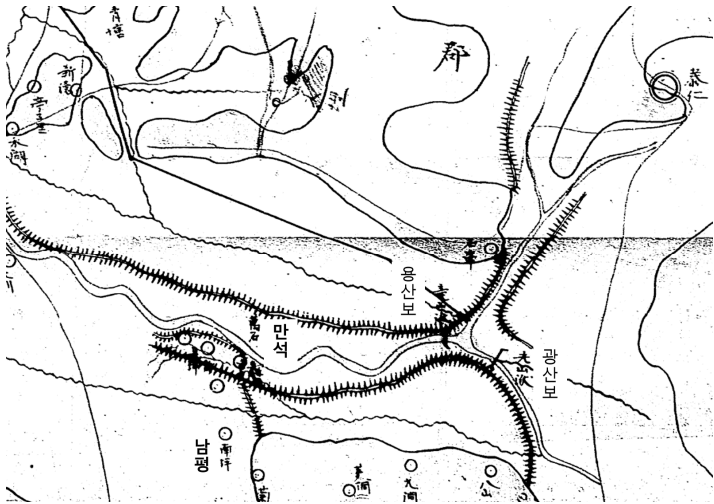
<지도 2-1> (제1호) 동진강 수리조합 예정 구역도



<지도 2-2> (제2호) 동진강 용산보 부근 평면도

13) 「동진수리조합설치인가 신청에 관한 건」, 1914. 국가기록원 소장.

위의 <지도 2-1, 2-2>를 보면 <지도 2-1>에서는 용산보의 위치가 태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그려져 있으나 용산보 부근 평면도인 <지도 2-2>에서는 용산보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한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산보의 위치는 <지도 3> 동진북부수리조합 구역도 내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용산보는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한 지점 바로 아래에 보의 표시까지 분명하게 그려 놓고 있다.



<지도 3> 동진북부수리조합 구역도

허수열은 위 지도를 토대로 용산보가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된 만석보이고 그 전부터 존재하던 것은 광산보였다고 설명¹⁴⁾하였으나 1911년 당시에는 이미 만석보가 없어진 상태였다. 1897년 11월 고부 군수로 부임한 안길수가 허물어진 채 방치되고 있던 만석보를 1898년 9월에 철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10년 동진북부수리조합에서 용산보를 개량하고 수로를 개수 정리한다고 한 것을 토대로 <지도 3>의 용산보가

14)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55~57쪽

만석보이다라고 단정한다면 1898년 철거 이후에도 보의 기능이 일부 남아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지도 3>에는 용산보의 하류에 ‘萬石’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만석이라 쓰여진 위치는 동진강 둔치에 해당하는 곳이다. 마을 표시 ‘○’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만석이라는 마을이 없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동진강 둔치에 써 놓은 이 만석이 조병갑이 쌓은 만석보의 위치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제방 표시가 만석 아래 쪽에 남평에서 북쪽으로 올라다 동서로 있는 제방을 교차해 둔치에 있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제방을 강 건너편 제방으로 연결할 경우 만석보의 위치는 용산보가 아닌 그보다 하류에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도 4> 1937년 만석보 부근(상), 동진강 수계(하)

수리조합 구역도와 1934년 지도를 보면 정읍천과 동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제방이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방을 일찍부터 축조한 것은 합류 지점에 수량 증가로 장마기에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병갑이 만석보를 크게 개축해서 오히려 수재를 입었다는 기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1961년 3월 2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문제의 만석보는 정읍천과 동진강의 방축공사로 수십년 전에 헐리우고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태인장을 보고 돌아오는 이평 장꾼들이 범석대고 있었다. 만석을 증수하겠다면 이 보는 만민을 착취하고 헐리워 버렸으며 지금은 섬진강의 「댐」이 이 만석보 역할을 하고 있다.¹⁵⁾

당시 취재를 한 이규태 기자는 “당시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분은 2, 3년 전까지도 몇 분 살아있었다는 데 이젠 찾아볼 수 없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해서 기억하고 있는 분은 두어 명 만나볼 수 있었으나 아흔살이 넘어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다”하여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의하면 만석보 자리에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한다. 그러나 1969년 항공사진에 보이는 다리는 현재 신태인과 이평면을 잇는 736번 지방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만석보(용산보)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류 지점이 아니라 정읍천과 태인천을 각기 연결하는 다리이다.

15) 『조선일보』 1961년 3월 26일. 「동학혁명의 발자취」



〈사진 2〉 태인천에 놓인 콘크리트다리(사진 3의 ○ 표시).
지금은 새로 다리가 놓이면서 폐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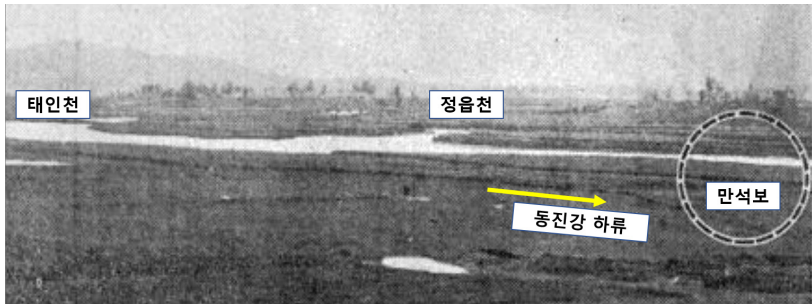
〈사진 3〉 1969년 만석보 부근 항공사진

한편, 만석보의 위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72년 8월 11일자 경향신문 기사에서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부임한 것이 1892년, 이듬해 봄부터 (탐관)오리의 표본으로 기록될 탐학을 저지른 것이 동진강의 상류인 태인천과 정읍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만석보의 개수공사 명령이었다.

이곳엔 이미 팔왕리보(八旺里淤)와 구보(舊淤) 등이 있었는데도 일손이 달리는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 그 밑에 만석보의 수축을 강행한 것이다. 조병갑은 처음 농민들에게 '새로 만석보를 수축하면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공사장에 나온 사람에게는 가을세 수세를 탕감해준다고 피었다.¹⁶⁾

이 기사에 의하면 원래 팔왕리보와 구보가 있었고, 조병갑이 그 밑에 만석보를 수축한 것이다. 이는 기존 의견과 달리 정읍천과 태인천 합류 지점에 팔왕리보, 구보, 만석보 등 세 개의 보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만석보의 위치를 처음 비정해 놓았다.



〈사진 4〉 만석보 위치 비정 사진(경향신문)

이 <사진 4>에 “동학혁명의 불씨가 됐던 만석보 자리(○표).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지만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된 곳에서 하류로 1km 쯤 밑에 있었다.”고 하여 합류지점에서 하류로 1km로 비정하였으며,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고 명기하였다.

1973년 5월 만석보유지비가 갑오동학기념사업회의 건의로 세워졌다. 1972년 경향신문의 기사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

16) 『경향신문』 1972년 8월 11일. 「한반도 백년」 기획시리즈 58 '동학혁명 기수 전봉준(7)'

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석보유지비의 위치는 건립 당시에도 본래의 위치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¹⁷⁾ 당시 고증을 한 최현식이 정확한 지점을 적시하였음에도 유신정권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현재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 되면서 1997년 당시 이평면장이었던 김동길에 의해 기존에 잘못 세워진 유지비에서 약 500m 하류 지점에 새로운 만석보유지비가 건립되었다.

한편, 만석보터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고증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계획』 보고서에서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1930년대의 지도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만석보의 축조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목을 확인하여, 1997년에 설치한 유지비 위치가 조병갑이 축조한 만석보의 위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만석보 말목 발견지는 새로 세워진 만석보 유지비 건너편이다. 말목 발견지의 정확한 지점은 아니지만 위치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4년 발견된 만석보 말목으로 추정된 말목은 조사결과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목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⁸⁾ 말뚝이 만석보와 동시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만석보유지비보다 500m 쯤 더 하류라는 증언 등의 내용과 1972년 경향신문에서는 합류지점으로 부터 1km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과의 관계성 분석이 필요하다. 문제는 합류지점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의 사진은 말목 발견

17) 조광한, 2023,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83쪽.

18) 2023년 11월 3일,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서인석(전 동학사업소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만석보 말목이 발견되었을 당시, 말목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여,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분석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다.

지 북쪽에서 합류지점을 향해 촬영한 것이다. 합류지점을 만석보 전망대로 잡을 경우 말목 발견지까지는 1km 정도의 거리이다. 최현식이 구유지비로부터 500m 내려가야 한다고 한 점 역시 만석보 전망대로부터는 1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거리이다.



〈사진 5〉 2004년 발견된 만석보 말목(추정)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계획』)



〈사진 6〉 말목 발견지 도면과 위성사진(좌)

만석보의 위치와 관련하여 『쇼와 9년 11월 충청남도·전라남북도 사료채방 복명서』¹⁹⁾에서는

19)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도서등록된 자료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

백산은 약 46·7미터의 구릉으로 동진강 일대의 옥야를 내려다 보고 갑오동학당비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만석보(정읍군 이평면 두전리 부근에서 북쪽의 용북면에 이른다. 옛날에는 답내면이라 칭하였다)와 동도(東徒)와 전주감영 병사의 첫 총돌지인 황토치(黃土峙, 덕천면 동죽리 망제리에 이르는 도로에 위치한 고개로 망제봉의 북부에 있다)가 손짓하여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고 하여 만석보가 두전리 부근과 용북면을 이어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전리는 현재 새로 세워진 만석보유지비보다 더 하류지역이다. 두전리 부근에서 용북면으로 만석보가 설치되었다는 이 기록은 <지도 3>에 만석이라고 쓰여진 도면의 내용과 일치한다. <지도 3>이 정확한 측량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만석이라 쓰여진 위치는 지금 황전마을과 송월남평마을회간 사이 하천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대략 만석보 터로부터 2.5Km 정도 하류이다.

새롭게 새운 만석보유지비가 만석보의 위치라는 증언이나 2004년 발견된 말뚝이 실재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용산보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한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으로 보면 만석보의 것으로 추정할 말뚝이 있는 곳에 보(洑)의 시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말뚝이 당시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 시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만석보가 있었던 곳에 이후 다시 보를 설치했었을 수도 있으나, <지도 3>에 쓰여진 만석의 글씨를 고려해 볼 때 만석보의 위치는 새로 새운 만석보유지비보다 더 하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다. 본 자료는 왕현중교수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제공한 자료로 기념재단으로부터 제공 받았음을 밝힌다.

VI. 만석보 위치 재지정을 위한 과제

‘만석보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만석보 위치 고증에 따른 문화재 재지정 관련 법령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9조(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조례 제4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6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의 해제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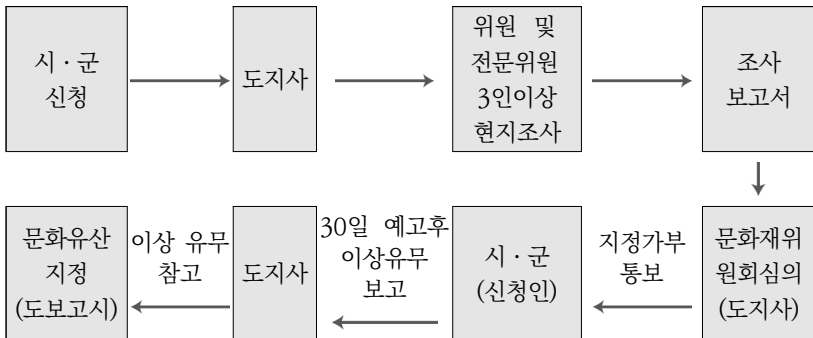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인정 또는 해제 사유



만석보지(萬石湫址) 위치 재지정 문제는 현재 지정 고지된 지역을 확대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고지 지역을 해제하고 새로 고증된 지역을 지정(또는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만석보지의 지정 구역 면적은 1,6980㎡이며 지적상 면적은 9,183㎡이므로 지정 면적을 고증된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은 과도한 문화유산 지정 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지정 구역을 해제하고 고증된 지역을 새로 지정(변경)해야 한다. 문화유산을 지정(변경)할 경우 지정에 준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문화유산 지정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검토의견서를 비롯 12종이다.

1.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등 심의 참고자료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기타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사진자료, 언론보도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전·후·좌·우 전경, 세부현황, 이미지파일 포함), 탁보사진
7.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도면(문화재 위치도, 지정/보호구역 지적도(1:500~1:1,500), 지정/보호구역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셰이프(SHP) 파일 포함)
8.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9. 문화재 보존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양)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12. 구비서류는 책자(칼라인쇄, 50페이지 이상, 15부) 및 CD(1매)로 제출

만석보지의 위치 재지정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위의 구비서류를 볼 때 선행해야 하는 과제는 학술고증자료의 확보이다. 기존 보고서와 논문 등에서 만석보 터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문화재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특성상 물적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물적 증거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통상 발굴조사는 추정 지역의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석보의 위치가 지금까지 알려진 지역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발굴조사는 위치 고증에 대한 문헌이나 구술 등의 자료를 좀더 수행하여 일정 정도 특정할 수 있을 때 진행해야 한다.

만석보는 동진강에 설치된 수리시설이다. 따라서 동진강과 관련된 문헌자료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동진강 수리조합 및 도수로 설치 관련 자료와 일제강점기 이후 동진강 직강화 공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동진강 수리조합 관련 자료는 국가기록원 이외에도 동진수리조합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이관되어 있다. 만석보가 위치한 일대의 동진강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진북부수리조합 구역도에 쓰여진 만석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과학적인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지형분석은 항공사진, 지형도, 지적원도, 토양도, 고지도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²⁰⁾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항공사진, 지도 이외에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지적원도와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지적도 등을 포함해서 동진수리조합 등 일제강점기 문서자료 등에서도 지도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석보 위치 비정이라는 관점에서 동학관련 1차 사료

20) 이진주, 2023, 「정읍 만석보 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정량적 연구 제언」,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61~62쪽.

및 신문, 잡지 등의 기록을 수집 보완한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추적 최대한 수집하며, 만석보 일대의 하천 정비 사업 등의 이력을 추적 보완한다.

최근 발굴에 앞서 시행하는 지하 물리탐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리탐사는 지하투시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er), 전기비저항 탐사(Resistivity), 자력탐사(Magnetomerty)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물리탐사의 경우 다양한 조건에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갈수기나 동절기에 추정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발굴조사에 앞서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맺음말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역사적 주요 사건 또는 인물에 대한 기억과 전승의 중요성 때문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기존의 체제에 도전했던 역사성을 가진 경우 가시적인 흔적을 남기거나 보존하기는 쉽지 않았다. 역사를 계승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는 필수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실체의 역사적 존재성을 확보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존재성을 시각적으로 전환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비는 역사적 현장에 세워졌을 때만 그 기능을 바로할 수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만석보 혁파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

동학농민혁명을 답사할 때 구차한 위치 설명을 덧붙여야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설이라도 듣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곳을 역사 현장으로 인지하게 된다.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기념비가 세워진 곳으로 연관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소의 역사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의 현장을 복원해 내는 것은 역사적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좀 더 일찍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록이라도 남겨 놓았으면 좋았겠지만, 가시적인 기록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전승된 기억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억의 파편들을 모으고, 사료를 찾고, 발굴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만석보의 말뚝을 추정되는 목재를 발견한 것은 비록 당 시대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2004년으로 비교적 멀지 않은 시기이다. 그 흔적을 학문적으로 확인하고 기억과 자료 수집을 통해 만석보 터의 현장을 새롭게 확정하고 드러내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24. 4. 1. 심사일 : 2024. 4. 24. 게재확정일 : 2024. 4. 29.

참고문헌

<자료>

-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鎖錄)』.
『고종실록』.
『동학사(초고본)』(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
『전봉준공초』(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
『동도문변』(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6).
「군수김후우현휼민선정비(郡守金侯佑鉉恤民善政碑文)」(『이평면백년사』).
「동진수리조합설치인가 신청에 관한 건」, 1914. 국가기록원.
『경향신문』 1972년 8월 11일.
『동아일보』 1931년 9월 22일.
『조선일보』 1933년 2월 10일, 1936년 10월 11일, 1961년 3월 26일, 1974년 4월 12일.

<단행본>

- 김상기, 1947, 『東學과 東學亂』, 대성출판사.
김용덕, 1973, 『東學革命 혁명투사 全琿準』, 同學出版社.
오지영, 1940, 『東學史』, 永昌書館.
정읍시, 2004, 『동학농민혁명유적지복원 정비계획』.
정창렬, 1985, 『古阜民亂의 研究』, 한국사연구회.
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논문>

- 이진주, 2023, 「정읍 만석보 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정량적 연구 제언」,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조광한, 2023,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기타>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시스템 <https://gis-heritage.go.kr>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 시스템. <http://www.e-donghak.or.kr>

〈Abstract〉

Reviewing the Site of the Manseokbo(萬石湫)
in Gobu(古阜), 1894

Hong, Seongduk*

The destruction of Manseokbo was the beginn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egan on Jan. 10, 1894, when farmers gathered at the Malmok Marketplace attacked the government office and destroyed Manseokbo. However, the exact location of Manseokbo is unknown.

In 1973 and 1997, a monument was erected to commemorate the Manseokbo, bu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it was where Manseokbo used to be. The location of the monument is also different from where Manseokbo used to be. A map depicting the location of Manseokbo is included in the record of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ongjin Repair Association in 1914. Since this map is also not a survey map,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loc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wooden pegs identified in 2004 were not from the tim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monument should be erected at the historical site in order to function properly. The area where there was the Manseokbo is different from where the Manseokbo was located. This is why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o determine the cultural heritage area. The most reliable way is to excavate the area where the Manseokbo is believed to have

* Jeonju University, Professor

been. Due to the nature of the river, there is a possibility to check the wooden stake. In addition, the location needs to be reconfirmed and modified through memory and data collection.

Key word : Manseokbo, Gwangsanbo, Malmok Marketplace(말목장터), Dongjin Repair Association, Manseokbo Monument